

1. 개정이유

청소년수련시설 등록신청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첨부서류 중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외하고,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‘청소년육성’ 분야는 청소년활동·보호·복지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‘청소년활동’ 분야로 제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신청 첨부서류 중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을 제외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(안 제5조, 안 별지 제8호서식)
- 나.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 분야에 청소년복지시설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보호·복지 분야 포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 수렴 예정
- 라. 기 타 : 1)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
3) 행정규제 심사 예정

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제15조제6항 또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7조제2항”을 “제15조제6항”으로, “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”을 “사용시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)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)
2. 전기안전점검확인서(「전기사업법」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3.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(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

제7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종사한 경력
6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,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
7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에 종사한 경력
8.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

별지 제8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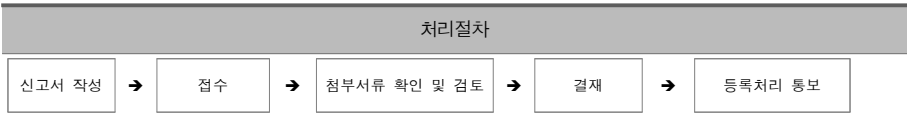
부 칙

(뒤 쪽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	1. 등록번호, 등록연월일 및 변경사항은 변경등록신청 시에만 적습니다. 2. 등록증재교부 신청 시에는 설치운영자, 수련시설의 명칭, 설치장소, 등록번호, 등록연월일 및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만 적습니다.
신청인 제출서류	<등록·변경등록의 경우> 1. 시설별일람표(「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) 1부 2. 운영계획서 1부 3.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.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.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·인가·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.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. 「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1부(도시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※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·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,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. <등록증재교부의 경우> :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전기안전점검확인서(「전기사업법」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3.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증명서(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만 해당합니다)

수수료	
구 분	수수료
가.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, 유스호스텔, 청소년특화시설	22,000원
나. 청소년아영장, 청소년문화의집	15,000원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등록신청서류 등)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, 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.	제5조(등록신청서류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<u>전기안전점검확인서(「전기사업법」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</u>	<삭 제>
9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5조 제6항 또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7조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(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	9. ----- 제15조제6항----- ----- ----- 사용시설----- -----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	② ----- ----- -----

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)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.	----- 각 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<신 설>	1. <u>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)</u>
<신 설>	2. <u>전기안전점검확인서(「전기사업법」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</u>
<신 설>	3. 「 <u>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</u> 」 제44조제2항에 따른 <u>완성검사증명서(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</u>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)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.	제7조(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	5. 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종사한 경 력
<u><신 설></u>	6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 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, 청소 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업 무에 종사한 경력
<u><신 설></u>	7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 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 밖 청 소년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에 종사한 경 력
<u><신 설></u>	8.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